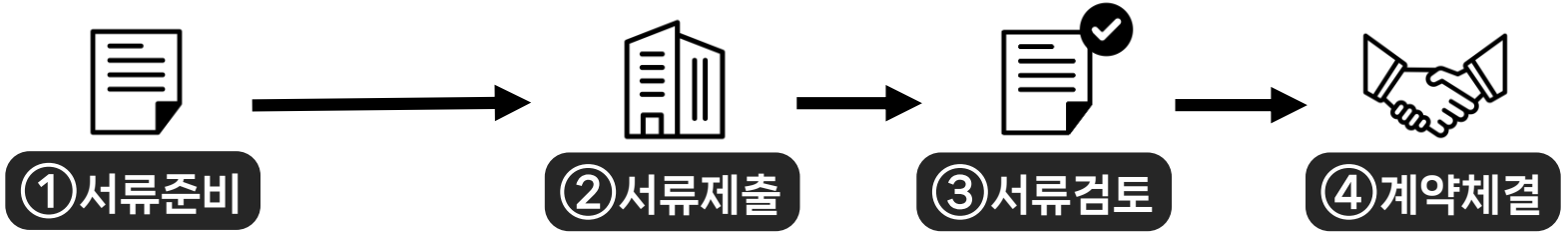


임대신고 신청절차

인천테크노파크 확대산업기술단지 IT·BT·AT센터 송도건원테크노큐브



임대기업

- ① 임대신고서
- ② 임대에 관한 계약서 사본
- ③ 건축물대장
- ④ 건물등기부등본
- ⑤ 임대계획평면도
*분할임대시

임차기업

- ① 입주신청서
- ② 사업계획서
- ③ 사업자등록증
-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⑤ 법인등기부등본
*해당시제출

- 분양필지 내 건축연면적 30% 이하
- 임차업체 2개사 이하
- 집합건물 내 분양호실 적용기준 →
- 분할임대는 호실당 분양면적 기준 180㎡ 이상일시 가능

소유호실	임대가능호실
1개호실	1개호실
2개호실	2개호실
3개호실	2개호실
이상	3개호실

제출방법

or

직접방문 등기우편

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, 8층 단지조성팀 (810호)

- ✓ 관련 법규에 따라 검토진행
- ✓ 추가 서류 필요시 추후 요청
- ✓ 특이사항 발생시 실무위원회 진행

입주심사
결과 안내 공문

▼

입주계약 체결
(입주 승인시)

계약 시 아래의 서류 지참

입주(변경)계약서 2부
 사업개시신고(확인)서
 실태조사서 도장

※ 안내공문 통보 후 1주 이내 계약체결



※ 상기 사항은 **임대. 임차기업의 제출서류가 완료된 이후**를 전제로 함 (인천TP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)

※ 입주심사(부결 등) 결과로 인하여, 임대. 임차기업 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**인천TP 일체 책임 없음**

※ **입주계약 변경신청서** 작성 -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으로 추가호실 매입시 또는 회사명·대표자변경·업종변경·사업계획변경 등

※ **관련 법규**: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, 산업기술단지조성 운영요령, 산업기술단지 관리지침,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※ **임차인 퇴거 시 반드시 임대인은 인천TP에 통보**